|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2007년 3월 16일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통과, 2017년 2월 24일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6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수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1차 수정, 2018년 12월 29일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전력법’ 등 4부 법률 수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2차 수정)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기업과 기타 수입을 취득한 조직(이하 ‘기업’이라 통칭)이 기업소득세의 납세자이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개인 독자기업 및 합명기업은 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조 기업은 거주자기업과 비거주자기업으로 구분한다.  본 법에서 일컫는 거주자기업은 법에 의거 중국 경내에 설립되었고 또는 외국(지역)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실제 관리기구는 중국 경내에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본 법에서 일컫는 비거주자기업은 법에 의거 외국(지역)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고 실제 관리기구는 중국 경내에 주재하지 않으나 중국 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였거나 또는 중국 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으나 중국 경내 원천 소득이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제3조 거주자기업은 중국 경내 및 경외 원천 소득에 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비거주자기업이 중국 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는 경우, 그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여 취득한 중국 경내 원천 소득과 중국 경외에서 발생하였으나 그 기구 및 장소와 실제 관계가 있는 소득에 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비거주자기업이 중국 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였으나 취득한 소득이 그 기구 및 장소와 실제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중국 경내 원천 소득에 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25%이다.  비거주자기업이 본 법 제3조 제3관에 규정된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세율은 20%이다.  제2장 과세소득액  제5조 기업의 매 1개 납세연도의 수입총액에서 비과세수입, 면세수입, 각종 공제 및 허용된 이전연도 손실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이 과세소득액이다.  제6조 기업이 화폐 형식과 비화폐 형식으로 각종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수입이 수입총액이다. 다음을 포함한다.  (1) 화물판매 수입  (2) 노무제공 수입  (3) 재산양도 수입  (4) 배당금 및 이윤 등 권익성 투자수익  (5) 이자수입  (6) 임대료 수입  (7) 특허권사용료 수입  (8) 기부금 수입  (9) 기타 수입  제7조 수입총액 중 아래의 수입은 비과세수입이다.  (1) 재정 지원금  (2) 법에 의거 재정 관리로 수취 및 불입한 행정사업성 요금 및 정부성 기금  (3)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비과세수입  제8조 기업에 실제 발생하고 수입 취득과 유관하며 합리적인 지출(원가, 비용, 세금, 손실과 기타 지출을 포함)은 과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를 허가한다.  제9조 기업에 발생한 공익성 기부 지출이 연간 이윤총액 12% 이내 부분은 과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를 허가한다. 연간 이윤총액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월 후 3년 내 과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를 허가한다.  제10조 과세소득액 계산 시, 아래의 지출은 공제할 수 없다.  (1) 투자자에게 지급한 배당금 및 이윤 등 권익성 투자수익 비용  (2) 기업소득세 세금  (3) 세수 체납금  (4) 벌금 및 과태료와 몰수된 재물의 손실  (5) 본 법 제9조에 규정된 이외의 기부금 지출  (6) 후원(협찬) 지출  (7) 인정되지 않은 준비금 지출  (8) 수입 취득과 무관한 기타 지출  제11조 과세소득액 계산 시, 기업이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고정자산 감가상각은 공제를 허가한다.  아래의 고정자산은 감가상각 공제를 계산할 수 없다.  (1) 주택 및 건축물 이외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  (2) 운영리스 방식으로 임차한 고정자산  (3) 금융리스 방식으로 임대한 고정자산  (4) 이미 전액을 감가상각으로 계상하였으나 여전히 계속 사용하는 고정자산  (5) 경영활동과 무관한 고정자산  (6) 고정자산으로 단독 평가하여 장부에 기입한 토지  (7) 기타 감가상각 공제를 계산할 수 없는 고정자산  제12조 과세소득액 계산 시, 기업이 규정에 따라 계산한 무형자산 상각비용은 공제를 허가한다.  아래 무형자산은 상각비용 공제를 계산할 수 없다.  (1) 자체 개발한 지출을 과세소득액 계산 시 이미 공제한 무형자산  (2) 자작(自作)한 영업권  (3) 경영활동과 무관한 무형자산  (4) 기타 상각비용 공제를 계산할 수 없는 무형자산  제13조 과세소득액 계산 시, 기업에 발생한 아래 지출은 장기 상각비용으로서, 규정에 따라 상각하는 경우 공제를 허가한다.  (1) 이미 전액을 감가상각으로 계상한 고정자산의 개축 지출  (2) 임차한 고정자산의 개축 지출  (3) 고정자산의 대수선 지출  (4) 기타 장기 상각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출  제14조 기업이 대외투자 기간 자산에 투자한 원가는 과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없다.  제15조 기업이 재고를 사용 또는 판매하고자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재고원가는 과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를 허가한다.  제16조 기업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순가치는 과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를 허가한다.  제17조 기업이 기업소득세를 종합 계산 납부 시, 그 경외 영업기구의 손실은 경내 영업기구의 수익으로 공제할 수 없다.  제18조 기업의 납세연도에 발생한 손실은 이후연도로 이월을 허가하며, 이후연도의 소득 보전으로 사용하나 이월연한은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비거주자기업이 본 법 제3조 제3관에 규정한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그 과세소득액을 계산한다.  (1) 배당금 및 이윤 등 권익성 투자수익과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 소득은 수입 전액이 과세소득액이다.  (2) 재산양도 소득은 수익 전액을 재산 순가치로 공제한 후의 잔액이 과세소득액이다.  (3) 기타 소득은 전항 2개에 규정된 방법을 참조하여 과세소득액을 계산한다.  제20조 본 장에 규정된 수입과 공제의 구체적 범위, 기준과 자산을 세무 처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 및 세무 주관부문에서 규정한다.  제21조 과세소득액 계산 시, 기업재무 및 회계처리 방법과 세수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이 불일치하는 경우, 세수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제3장 납부세액  제22조 기업의 과세소득액에서 적용세율을 곱하고, 본 법의 세수혜택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감면 및 공제받은 세액을 감한 후의 잔액이 납부세액이다.  제23조 기업이 취득한 아래의 소득을 이미 경외에서 납부한 소득세 세액은 당기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공제한도액은 해당 소득을 본 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납부세액이다.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후 5년 내 매년 공제한도액에서 당해 공제세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분을 공제할 수 있다.  (1) 거주자기업의 중국 경외 원천인 과세소득  (2) 비거주자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고 중국 경외에서 발생하였으나 해당 기구 및 장소와 실제 관계가 있는 과세소득을 취득한 경우  제24조 거주가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외국기업으로부터 분배 받은 중국 경외 원천인 배당금 및 이윤 등 권익성 투자수익은 외국기업이 경외에서 실제 납부한 소득세 중 해당 소득을 부담하는 부분에 속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기업의 공제가능 경외 소득세로서 본 법 제23조에 규정된 공제한도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4장 세수혜택  제25조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을 장려하는 산업과 항목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 혜택을 부여한다.  제26조 기업의 아래 수입은 면세수입이다.  (1) 국채 이자수입  (2) 조건에 부합하는 거주자기업 간의 배당금 및 이윤 등 권익성 투자수익  (3) 중국 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한 비거주자기업이 거주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해당 기구 및 장소와 실제 관계가 있는 배당금 및 이윤 등 권익성 투자수익  (4) 조건에 부합하는 비영리조직의 수입  제27조 기업의 아래 소득은 기업소득세를 면제 및 감면 징수할 수 있다.  (1)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항목에 종사하는 소득  (2)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초시설항목 투자경영에 종사하는 소득  (3) 조건에 부합하는 환경보호 및 에너지절약 및 물절약 항목에 종사하는 소득  (4) 조건에 부합하는 기술양도소득  (5)본 법 제3조 제3관에 규정된 소득  제28조 조건에 부합하는 소형박리기업은 기업소득세를 20%의 세율로 감면하여 징수한다.  국가의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한 고신기술기업은 기업소득세를 15%의 세율로 감면하여 징수한다.  제29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본 민족자치지방의 기업이 납부해야 할 기업소득세 중 지방 분배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징수 또는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자치주, 자치현이 감면 징수 또는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받아야 한다.  제30조 기업의 아래 지출은 과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다.  (1) 신기술, 신제품, 신공정 개발로 발생한 연구개발 비용  (2) 장애인원 채용 및 국가 장려로 채용한 기타 취업인원에게 지급한 급여  제31조 창업투자기업이 국가 중점지원과 장려를 필요로 하는 창업투자에 종사하는 경우 투자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과세소득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32조 기업의 고정자산이 기술 진보 등의 원인으로 인해 감가상각이 확실히 필요한 경우 감가상각 연한 단축 또는 감가상각 가속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제33조 기업이 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국가 산업 정책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취득한 수입은 과세소득액 계산 시 수입을 감면할 수 있다.  제34조 기업이 환경보호, 에너지절약•물절약, 안전생산 등 용도로 전용 설비를 구입한 투자액은 일정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35조 본 법에서 규정한 세수혜택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36조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수요에 근거하여 또는 돌발사건 등의 원인으로 인해 기업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국무원은 기업소득세 특정 혜택 정책을 제정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비안할 수 있다.  제5장 원천징수  제37조 비거주자기업이 본 법 제3조 제3관에 규정된 소득을 취득하여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를 실행하고, 지급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세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 회 지급하거나 기간이 도래하여 지급해야 할 시, 지급 또는 기간이 도래하여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원천징수한다.  제38조 비거주자기업이 중국 경내에 공사 작업과 노무 소득을 취득하여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에 대해 세무기관은 공사대금 또는 노무비의 지급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39조 본 법 제37조, 제38조에 규정된 원천징수해야 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의거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는 소득발생지에서 납부한다. 납세자가 법에 의거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해당 납세자의 중국 경내에 기타 수입 항목의 지급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 중에서 해당 납세자의 납부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40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회 원천징수한 세금은 원천징수한 날로부터 7일 내 국고에 납입하고, 소재지의 세무기관에 원천징수 기업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특별납세조정  제41조 기업과 그 특수관계자 간의 업무 거래가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자의 과세수입 또는 소득액을 감소시키는 경우, 세무기관은 합리적 방법에 따라 조정할 권한을 가진다.  기업과 그 특수관계자가 공동으로 무형자산을 개발 및 양도 받거나 또는 공동으로 노무를 제공 및 수용하여 발생한 원가는 과세소득액 계산 시, 독립거래원칙에 따라 할당하여야 한다.  제42조 기업은 세무기관에 그 특수관계자와의 업무 거래의 정가 원칙과 계산방법을 제출하고, 세무기관과 기업이 협상 및 확인 후, 예약정가 안배를 타결할 수 있다.  제43조 기업이 세무기관에 연간 기업소득세 납세 신고서를 제출할 시, 그 특수관계자와의 업무 거래에 관하여 연간 관련업무 거래 보고서를 첨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이 관련업무 조사 진행 시, 기업 및 그 특수관계자 그리고 관련업무 조사와 연관된 기타 기업은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4조 기업이 그 특수관계자와의 업무 거래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 불완전 자료를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그 관련업무 거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세무기관은 법에 의거 그 과세소득액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제45조 거주자기업 또는 거주자기업과 중국 거주자가 통제하는 실질적 세금 부담이 본 법 제4조 제1관 규정 세율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국가(지역)에 설립한 기업이 합리적 경영 수요가 아닌 이유로 이윤에 대해 분배 또는 감소 분배를 하지 않은 경우, 상술한 이윤 중 해당 거주자기업에 귀속되어야 하는 부분은 해당 거주자기업의 당기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46조 기업은 그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채권성 투자와 권익성 투자의 비율이 규정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이자 지출은 과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없다.  제47조 기업이 기타 합리적 상업 목적을 갖추지 못한 안배로 그 과세수입 또는 소득액을 줄이는 경우, 세무기관은 합리적 방법에 따라 조정할 권한을 가진다.  제48조 세무기관은 본 장 규정에 따라 납세조정을 진행하고, 세금 추징이 필요한 경우, 세금을 추징하고 또한 국무원 규정에 따라 이자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제7장 징수관리  제49조 기업소득세의 징수관리는 본 법 규정을 제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50조 세수법률 및 행정법규의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거주자기업은 기업등기 등록지가 납세지이나 등기등록지가 경외일 경우에는 실제관리기구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거주자기업이 중국 경내에 법인자격을 갖추지 않은 영업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기업소득세를 종합 계산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 비거주자기업이 본 법 제3조 제2관에 규정된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기구 및 장소 소재지가 납세지이다. 비거주자기업이 중국 경내에 2개 또는 2개 이상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고 국무원 세무주관부문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그 주요 기구 및 장소를 선택하여 기업소득세 종합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비거주자기업이 본 법 제3조 제3관에 규정된 소득을 취득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소재지가 납세지이다.  제52조 국무원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기업간 기업소득세를 합병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53조 기업소득세는 납세연도에 따라 계산한다. 납세연도는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다.  기업이 1개 납세연도 중간에 개업 또는 경영활동을 종료하여 해당 납세연도의 실제경영기간이 12개월보다 짧은 경우, 그 실제 경영기한을 1개 납세연도로 하여야 한다.  기업이 법에 의건 청산 시, 청산기간을 1개 납세연도로 하여야 한다.  제54조 기업소득세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납한다.  기업은 월 또는 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내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예납 납세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예납하여야 한다.  기업은 연도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연간 납세신고서 제출 및 정산하여 세금 납부•환급을 결산하여야 한다.  기업은 기업소득세 납세신고서 제출 시,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보고서와 기타 유관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5조 기업이 연도 중간에 경영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실제경영종료일로부터 60일 내 세무기관에 당기 기업소득세 정산납부를 처리하여야 한다.  기업은 말소등기를 처리하기 전, 그 청산소득에 관하여 세무기관에 신고하고 법에 의거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 본 법에 의거 납부한 기업소득세는 인민폐로 계산한다. 소득을 인민폐 이외의 화폐로 계산하는 경우 인민폐로 환산하여 계산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장 부칙  제57조 본 법 공포 전 이미 비준을 거쳐 설립한 기업이 당시의 세수법률 및 행정 법규 규정에 따라 저세율 혜택을 향유하는 경우, 국무원 규정에 따라 본 법 시행 후 5년내 점차 본 법에서 규정한 세율로 단계적으로 바꿀 수 있다. 정기적 감면세 혜택을 향유하는 경우, 국무원 규정에 따라 본 법 시행 후 계속해서 기한 만료까지 향유할 수 있으나 이익을 얻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않은 경우, 혜택 기한은 본 법 시행연도부터 계산한다.  대외경제합작과 기술교류 발전을 위해 법률에서 설치한 특정 지역 내, 또한 국무원이 이미 상술한 지역에 특수 정책을 집행하기로 규정한 지역 내 새로 설립한 국가의 중점지원이 필요한 고신기술(\*번역자 주-하이테크)기업은 과도성 세수혜택을 향유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국가가 이미 확정한 기타 장려류 기업은 국무원 규정에 따라 감면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제58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외국 정부와 체결한 세수 관련 협정이 본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협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9조 국무원은 본 법에 근거하여 실시조례를 제정한다.  제60조 본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1년 4월 9일 제7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과 1993년 12월 13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임시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2007年3月16日第十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五次会议通过；根据2017年2月24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六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的决定》第一次修正；根据2018年12月29日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七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等四部法律的决定》第二次修正）  第一章　总　则  第一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企业和其他取得收入的组织（以下统称企业）为企业所得税的纳税人，依照本法的规定缴纳企业所得税。  个人独资企业、合伙企业不适用本法。  第二条　企业分为居民企业和非居民企业。  本法所称居民企业，是指依法在中国境内成立，或者依照外国（地区）法律成立但实际管理机构在中国境内的企业。  本法所称非居民企业，是指依照外国（地区）法律成立且实际管理机构不在中国境内，但在中国境内设立机构、场所的，或者在中国境内未设立机构、场所，但有来源于中国境内所得的企业。  第三条　居民企业应当就其来源于中国境内、境外的所得缴纳企业所得税。  非居民企业在中国境内设立机构、场所的，应当就其所设机构、场所取得的来源于中国境内的所得，以及发生在中国境外但与其所设机构、场所有实际联系的所得，缴纳企业所得税。  非居民企业在中国境内未设立机构、场所的，或者虽设立机构、场所但取得的所得与其所设机构、场所没有实际联系的，应当就其来源于中国境内的所得缴纳企业所得税。  第四条　企业所得税的税率为25％。  非居民企业取得本法第三条第三款规定的所得，适用税率为20％。  第二章　应纳税所得额  第五条　企业每一纳税年度的收入总额，减除不征税收入、免税收入、各项扣除以及允许弥补的以前年度亏损后的余额，为应纳税所得额。  第六条　企业以货币形式和非货币形式从各种来源取得的收入，为收入总额。包括：  （一）销售货物收入；  （二）提供劳务收入；  （三）转让财产收入；  （四）股息、红利等权益性投资收益；  （五）利息收入；  （六）租金收入；  （七）特许权使用费收入；  （八）接受捐赠收入；  （九）其他收入。  第七条　收入总额中的下列收入为不征税收入：  （一）财政拨款；  （二）依法收取并纳入财政管理的行政事业性收费、政府性基金；  （三）国务院规定的其他不征税收入。  第八条　企业实际发生的与取得收入有关的、合理的支出，包括成本、费用、税金、损失和其他支出，准予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扣除。  第九条　企业发生的公益性捐赠支出，在年度利润总额12％以内的部分，准予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扣除；超过年度利润总额12％的部分，准予结转以后三年内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扣除。  第十条　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下列支出不得扣除：  （一）向投资者支付的股息、红利等权益性投资收益款项；  （二）企业所得税税款；  （三）税收滞纳金；  （四）罚金、罚款和被没收财物的损失；  （五）本法第九条规定以外的捐赠支出；  （六）赞助支出；  （七）未经核定的准备金支出；  （八）与取得收入无关的其他支出。  第十一条　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企业按照规定计算的固定资产折旧，准予扣除。  下列固定资产不得计算折旧扣除：  （一）房屋、建筑物以外未投入使用的固定资产；  （二）以经营租赁方式租入的固定资产；  （三）以融资租赁方式租出的固定资产；  （四）已足额提取折旧仍继续使用的固定资产；  （五）与经营活动无关的固定资产；  （六）单独估价作为固定资产入账的土地；  （七）其他不得计算折旧扣除的固定资产。  第十二条　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企业按照规定计算的无形资产摊销费用，准予扣除。  下列无形资产不得计算摊销费用扣除：  （一）自行开发的支出已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扣除的无形资产；  （二）自创商誉；  （三）与经营活动无关的无形资产；  （四）其他不得计算摊销费用扣除的无形资产。  第十三条　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企业发生的下列支出作为长期待摊费用，按照规定摊销的，准予扣除：  （一）已足额提取折旧的固定资产的改建支出；  （二）租入固定资产的改建支出；  （三）固定资产的大修理支出；  （四）其他应当作为长期待摊费用的支出。  第十四条　企业对外投资期间，投资资产的成本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不得扣除。  第十五条　企业使用或者销售存货，按照规定计算的存货成本，准予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扣除。  第十六条　企业转让资产，该项资产的净值，准予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扣除。  第十七条　企业在汇总计算缴纳企业所得税时，其境外营业机构的亏损不得抵减境内营业机构的盈利。  第十八条　企业纳税年度发生的亏损，准予向以后年度结转，用以后年度的所得弥补，但结转年限最长不得超过五年。  第十九条　非居民企业取得本法第三条第三款规定的所得，按照下列方法计算其应纳税所得额：  （一）股息、红利等权益性投资收益和利息、租金、特许权使用费所得，以收入全额为应纳税所得额；  （二）转让财产所得，以收入全额减除财产净值后的余额为应纳税所得额；  （三）其他所得，参照前两项规定的方法计算应纳税所得额。  第二十条　本章规定的收入、扣除的具体范围、标准和资产的税务处理的具体办法，由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规定。  第二十一条　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企业财务、会计处理办法与税收法律、行政法规的规定不一致的，应当依照税收法律、行政法规的规定计算。  第三章　应纳税额  第二十二条　企业的应纳税所得额乘以适用税率，减除依照本法关于税收优惠的规定减免和抵免的税额后的余额，为应纳税额。  第二十三条　企业取得的下列所得已在境外缴纳的所得税税额，可以从其当期应纳税额中抵免，抵免限额为该项所得依照本法规定计算的应纳税额；超过抵免限额的部分，可以在以后五个年度内，用每年度抵免限额抵免当年应抵税额后的余额进行抵补：  （一）居民企业来源于中国境外的应税所得；  （二）非居民企业在中国境内设立机构、场所，取得发生在中国境外但与该机构、场所有实际联系的应税所得。  第二十四条　居民企业从其直接或者间接控制的外国企业分得的来源于中国境外的股息、红利等权益性投资收益，外国企业在境外实际缴纳的所得税税额中属于该项所得负担的部分，可以作为该居民企业的可抵免境外所得税税额，在本法第二十三条规定的抵免限额内抵免。  第四章　税收优惠  第二十五条　国家对重点扶持和鼓励发展的产业和项目，给予企业所得税优惠。  第二十六条　企业的下列收入为免税收入：  （一）国债利息收入；  （二）符合条件的居民企业之间的股息、红利等权益性投资收益；  （三）在中国境内设立机构、场所的非居民企业从居民企业取得与该机构、场所有实际联系的股息、红利等权益性投资收益；  （四）符合条件的非营利组织的收入。  第二十七条　企业的下列所得，可以免征、减征企业所得税：  （一）从事农、林、牧、渔业项目的所得；  （二）从事国家重点扶持的公共基础设施项目投资经营的所得；  （三）从事符合条件的环境保护、节能节水项目的所得；  （四）符合条件的技术转让所得；  （五）本法第三条第三款规定的所得。  第二十八条　符合条件的小型微利企业，减按20％的税率征收企业所得税。  国家需要重点扶持的高新技术企业，减按15％的税率征收企业所得税。  第二十九条　民族自治地方的自治机关对本民族自治地方的企业应缴纳的企业所得税中属于地方分享的部分，可以决定减征或者免征。自治州、自治县决定减征或者免征的，须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  第三十条　企业的下列支出，可以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加计扣除：  （一）开发新技术、新产品、新工艺发生的研究开发费用；  （二）安置残疾人员及国家鼓励安置的其他就业人员所支付的工资。  第三十一条　创业投资企业从事国家需要重点扶持和鼓励的创业投资，可以按投资额的一定比例抵扣应纳税所得额。  第三十二条　企业的固定资产由于技术进步等原因，确需加速折旧的，可以缩短折旧年限或者采取加速折旧的方法。  第三十三条　企业综合利用资源，生产符合国家产业政策规定的产品所取得的收入，可以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减计收入。  第三十四条　企业购置用于环境保护、节能节水、安全生产等专用设备的投资额，可以按一定比例实行税额抵免。  第三十五条　本法规定的税收优惠的具体办法，由国务院规定。  第三十六条　根据国民经济和社会发展的需要，或者由于突发事件等原因对企业经营活动产生重大影响的，国务院可以制定企业所得税专项优惠政策，报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备案。  第五章　源泉扣缴  第三十七条　对非居民企业取得本法第三条第三款规定的所得应缴纳的所得税，实行源泉扣缴，以支付人为扣缴义务人。税款由扣缴义务人在每次支付或者到期应支付时，从支付或者到期应支付的款项中扣缴。  第三十八条　对非居民企业在中国境内取得工程作业和劳务所得应缴纳的所得税，税务机关可以指定工程价款或者劳务费的支付人为扣缴义务人。  第三十九条　依照本法第三十七条、第三十八条规定应当扣缴的所得税，扣缴义务人未依法扣缴或者无法履行扣缴义务的，由纳税人在所得发生地缴纳。纳税人未依法缴纳的，税务机关可以从该纳税人在中国境内其他收入项目的支付人应付的款项中，追缴该纳税人的应纳税款。  第四十条　扣缴义务人每次代扣的税款，应当自代扣之日起七日内缴入国库，并向所在地的税务机关报送扣缴企业所得税报告表。  第六章　特别纳税调整  第四十一条　企业与其关联方之间的业务往来，不符合独立交易原则而减少企业或者其关联方应纳税收入或者所得额的，税务机关有权按照合理方法调整。  企业与其关联方共同开发、受让无形资产，或者共同提供、接受劳务发生的成本，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应当按照独立交易原则进行分摊。  第四十二条　企业可以向税务机关提出与其关联方之间业务往来的定价原则和计算方法，税务机关与企业协商、确认后，达成预约定价安排。  第四十三条　企业向税务机关报送年度企业所得税纳税申报表时，应当就其与关联方之间的业务往来，附送年度关联业务往来报告表。  税务机关在进行关联业务调查时，企业及其关联方，以及与关联业务调查有关的其他企业，应当按照规定提供相关资料。  第四十四条　企业不提供与其关联方之间业务往来资料，或者提供虚假、不完整资料，未能真实反映其关联业务往来情况的，税务机关有权依法核定其应纳税所得额。  第四十五条　由居民企业，或者由居民企业和中国居民控制的设立在实际税负明显低于本法第四条第一款规定税率水平的国家（地区）的企业，并非由于合理的经营需要而对利润不作分配或者减少分配的，上述利润中应归属于该居民企业的部分，应当计入该居民企业的当期收入。  第四十六条　企业从其关联方接受的债权性投资与权益性投资的比例超过规定标准而发生的利息支出，不得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扣除。  第四十七条　企业实施其他不具有合理商业目的的安排而减少其应纳税收入或者所得额的，税务机关有权按照合理方法调整。  第四十八条　税务机关依照本章规定作出纳税调整，需要补征税款的，应当补征税款，并按照国务院规定加收利息。  第七章　征收管理  第四十九条　企业所得税的征收管理除本法规定外，依照《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的规定执行。  第五十条　除税收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外，居民企业以企业登记注册地为纳税地点；但登记注册地在境外的，以实际管理机构所在地为纳税地点。  居民企业在中国境内设立不具有法人资格的营业机构的，应当汇总计算并缴纳企业所得税。  第五十一条　非居民企业取得本法第三条第二款规定的所得，以机构、场所所在地为纳税地点。非居民企业在中国境内设立两个或者两个以上机构、场所，符合国务院税务主管部门规定条件的，可以选择由其主要机构、场所汇总缴纳企业所得税。  非居民企业取得本法第三条第三款规定的所得，以扣缴义务人所在地为纳税地点。  第五十二条　除国务院另有规定外，企业之间不得合并缴纳企业所得税。  第五十三条　企业所得税按纳税年度计算。纳税年度自公历1月1日起至12月31日止。  企业在一个纳税年度中间开业，或者终止经营活动，使该纳税年度的实际经营期不足十二个月的，应当以其实际经营期为一个纳税年度。  企业依法清算时，应当以清算期间作为一个纳税年度。  第五十四条　企业所得税分月或者分季预缴。  企业应当自月份或者季度终了之日起十五日内，向税务机关报送预缴企业所得税纳税申报表，预缴税款。  企业应当自年度终了之日起五个月内，向税务机关报送年度企业所得税纳税申报表，并汇算清缴，结清应缴应退税款。  企业在报送企业所得税纳税申报表时，应当按照规定附送财务会计报告和其他有关资料。  第五十五条　企业在年度中间终止经营活动的，应当自实际经营终止之日起六十日内，向税务机关办理当期企业所得税汇算清缴。  企业应当在办理注销登记前，就其清算所得向税务机关申报并依法缴纳企业所得税。  第五十六条　依照本法缴纳的企业所得税，以人民币计算。所得以人民币以外的货币计算的，应当折合成人民币计算并缴纳税款。  第八章　附　则  第五十七条　本法公布前已经批准设立的企业，依照当时的税收法律、行政法规规定，享受低税率优惠的，按照国务院规定，可以在本法施行后五年内，逐步过渡到本法规定的税率；享受定期减免税优惠的，按照国务院规定，可以在本法施行后继续享受到期满为止，但因未获利而尚未享受优惠的，优惠期限从本法施行年度起计算。  法律设置的发展对外经济合作和技术交流的特定地区内，以及国务院已规定执行上述地区特殊政策的地区内新设立的国家需要重点扶持的高新技术企业，可以享受过渡性税收优惠，具体办法由国务院规定。  国家已确定的其他鼓励类企业，可以按照国务院规定享受减免税优惠。  第五十八条　中华人民共和国政府同外国政府订立的有关税收的协定与本法有不同规定的，依照协定的规定办理。  第五十九条　国务院根据本法制定实施条例。  第六十条　本法自2008年1月1日起施行。1991年4月9日第七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四次会议通过的《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和外国企业所得税法》和1993年12月13日国务院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暂行条例》同时废止。 |